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66

발의연월일: 2021. 12. 23.

발 의 자:김성원·김용판·김정재

박대수 · 박덕흠 · 이양수

이주환 · 정희용 · 조명희

최춘식 • 태영호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 연령 자격을 25세로 규정하고 있음.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핵심적인 권리임. 그러나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 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 고자 함.

그리고 현행법상 후보자 기탁금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별로 금액을 정하고 있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득표율 1 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전액 또는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및 장애인에게 기탁금 규정이 부담으로 작용되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로도 작용될 수 있음.

이에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전액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 기회와 사전투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 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동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불리한 선거운동 규제를 받게 되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고, 인구 수 대비 충분한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사전투표의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군부대밀집지역 중심으로만 추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사전투표율 제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 와 선거인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 고 지방자치단체 간 선거운동 및 사전투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상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는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2021. 1.28. 선고, 2018헌가16).

이에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3항, 제56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57조제1항제1호, 제82조의6 삭제, 제148조제1항 후단 신설, 제261조제3항제4호 삭제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5세"를 각각 "18세"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4세 이하 후보자(이하 이 장에서 "청년후보자"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보자(이하 이장에서 "장애인후보자"라 한다)의 기탁금은 해당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제외한다)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에서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가목 중 "15"를 "15(청년후보자 또는 장애인후보자는 100분의 10)"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미만"을 "미만(청년후보자 또는 장애인후보자는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4항"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6조제1항 각 호"를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의6을 삭제한다.

제148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소의 개수는 해당 지역 읍·면·동의 통합·개편, 선거인 수 및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1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71조제3항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 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피선거권) ① (생 략)	제16조(피선거권) ① (현행과 같
	승)
② <u>25세</u>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	② <u>18</u> 4]
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③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	
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u>25세</u>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	18세
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	
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	
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제56조(기탁금) ①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 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 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 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6.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 <후단 삭제> 다 만, 34세 이하 후보자(이하 이 장에서 "청년후보자"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보자(이하 이 장에서 "장애인후 보자"라 한다)의 기탁금은 해당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제외 한다)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 ②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 청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해 당 선거 기탁금에서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 야 한다.
- ③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관할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 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 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 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 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 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 액
 -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 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생략)

- 2. (생략)
- ② <u>제56조제3항</u>에 따라 기탁금 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 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1				
가				
<u>15(청년후보자</u>				
또는 장애인후보자는 100				
분의 10)				
_				
나				
- 미만(청년후보자 또는				
장애인후보자는 100분의 5				
<u>이상 100분의 10 미만)</u>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u>제56조제4항</u>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
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
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
다.

- ③ ~ ⑤ (생 략)
-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저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③ ~ ② (생 략)
-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 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	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현행과 같음)
	2
	제56조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① (현행과 같음)
	<u><</u> 삭 제>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 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 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 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 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 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 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 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 으로 본다.

②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 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

- 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 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 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 니된다.
-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

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한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 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
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
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 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
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
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1
이 경우 사전투표	조의 기	개수
는 해당 지역 읍 • 면	년 • 동의	통

(2)	\sim	$\widehat{(6)}$	(생	략)
		(0)	\ 0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①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다.
- 1. ~ 3의2. (생략)
- 4.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 (생략)
- ④・⑤ (생략)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 1. 2. (생략)
- 3.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 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①·② (현행과 같음)

1. ~ 3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 5.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